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02-1996-070490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7-1 서울탑빌라트 제2층 제202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2		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7-1 서울탑빌라트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2길 65	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(아파트) 1층 441.42㎡ 2층 441.42㎡ 3층 441.42㎡ 4층 441.42㎡ 5층 441.42㎡ 6층 441.42㎡ 7층 441.42㎡ 8층 441.42㎡ 지하층 1099.74㎡ (층별용도 지하층 주차장 985.08 발전기실 18.72 펌프실 36.00 대기실 23.04, 응집실 36.90 1-8층아파트)	도로명주소 2019년7월22일 등기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7-1		대	1504.1㎡	1991년10월16일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1년10월16일	제2층 제202호	철근콘크리트조 205.29㎡	도면편철장 제6책449장

(대지권의 표시)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 소유권대지권	1504.1분의 93.27	1991년10월11일 대지권 1991년10월16일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5	소유권이전	2009년7월20일 제47019호	2009년7월20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	소유자 손혁 711012-*****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2길 65, 202호 (방배동, 서울탑빌라트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9	근저당권설정	2015년6월25일 제175961호	2015년6월25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240,000,000원 채무자 손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2길 65, 202호 (방배동, 서울탑빌라트)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신한은행 110111-001280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(태평로2가) (이수역지점)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‘기록사항 없음’ 으로 표시함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02-1996-070490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7-1 서울탑빌라트 제2층 제202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손혁 (소유자)	711012-*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2길 65, 202호 (방배동, 서울탑빌라트)	15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9	근저당권설정	2015년6월25일 제175961호	채권최고액 금240,000,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	손혁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